##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625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채현일·복기왕·이재강

신정훈 · 장철민 · 강득구

박상혁 · 최민희 · 김민석

김태년 • 양부남 • 전재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에 나누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통치 원리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행정부의 국가기관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비상계엄의 집행에 동원된 국군과 경찰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의 개의와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청사와 국회 경내로의 출입을 봉쇄하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진입이 전면 차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

니다.

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입법부의 권능 행사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며, 특히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제정된 국회법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의 국회 경호 의무와 회의 방해금지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의 안과 밖을 포함하여 국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확장하고(안 제143조) 현행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의장의 지휘과 감독을 받는 국회 소속의 조직으로 변경하며(안 제144조) 행정부가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를 이행할 때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안 제150조의2 신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공권력을 지휘한 자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함으로써(안 제165조 및 제166조), 대한민국 헌법과 권력분립의 가치를 수호하고 계엄 선포 등 행정부의 강제적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헌법적 권능 행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 중 "회기 중 국회"를 "국회"로,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경호권"으로 한다.

제144조의 제목 중 "경찰관"을 "국회경비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위(警衛)"를 "경위(警衛)와 국회경비대(國會警備隊)"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회경비대의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④ 국회경비대의 조직, 업무 지역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2(강제집행의 승인)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제115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5조 중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을 "방해하려는 행위를"로 한다.

제16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군, 경찰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휘·명령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	<u> 국회</u> 의
기 위하여 <u>국회 안에서 경호권</u>	<u>경호권</u> 을
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u>경찰관</u> ) ① 국회	제144조(경위와 <u>국회경비대</u> ) ① -
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u>경위</u>	
(警衛)를 둔다.	<u>경</u> 위(警衛)와 국회경
	<u>비대(國會警備隊)</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③ 국회경비대의 경찰공무원은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u>.</u>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	
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u>&lt;신 설&gt;</u>	④ 국회경비대의 조직, 업무 지
	역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u>&lt;신 설&gt;</u>	제150조의2(강제집행의 승인) 누
	구든지 「형사소송법」 제115
	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입
	<u>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u>
	<u>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신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
를 방해할 목적으로 군, 경찰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
관을 동원하여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
는 행위를 지휘・명령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

항과 같음)

① · ② (생 략)